

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

(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※ 「기탁 명세」란에는 기금 〇〇〇원, 컴퓨터 〇〇〇원 등으로 적습니다.

※ 「사용 용도」란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4조제2항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.